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8
----------	-----

2017. 12. 14.(목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12월 1일

(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최광주)

-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제·개정하는 법령, 중장기 계획 및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,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중인 조례·규칙
2.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라 한다)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
2.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
4.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,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획관, 체육보건안전과장, 행정과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,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.

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성별영향분석평가법 [법률 제14703호 일부개정 2017. 03. 21.]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12.20.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2.3.]

□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[법률 제28320호 일부개정 2017. 09. 19.]

제2조(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[성별영향분석평가법](#)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[제5조](#)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“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“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9.>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
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
4. 「[지방재정법](#)」 [제41조제2항](#)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·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

2.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조직,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경우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(분석평가의 시기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9.>

1. [제2조제1항](#)제1호에 따른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: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
2. [제2조제1항](#)제1호에 따른 조례·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:
[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](#)에 따른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·의결 전
3. [제2조제1항](#)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: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
4. [제2조제1항](#)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:
[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](#)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

제5조(분석평가서의 작성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[법 제8조제1항](#)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
2. 정책 대상자의 성비(性比) 등 정책 환경의 성별(性別) 특성
3.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

제6조(분석평가결과의 제출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[법 제9조제1항](#)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(性認知)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[법 제14조제1항](#)에 따라 소속 실장·국장(실·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·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)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[법 제14조제1항](#)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[법 제14조제1항](#)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)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[법 제5조](#)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
2. [법 제6조](#)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지원
3. [법 제9조](#)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,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
4. [법 제11조제2항](#)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 지원
5. [법 제15조](#)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운영 지원
6.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

[전문개정 2017.9.19.]

제13조(분석평가 교육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[법 제15조](#)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[법 제15조제1항](#)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8.3.>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8.3.>